

## 감사보고서


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2023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4년 4월 22일

학교법인 신일학원

감사 최문규 (인) 

감사 김학신 (인) 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077호)

피감사자

직명 학교법인 신일학원

성명 임재훈 (인) 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학교법인 신일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23년 3 월 1 일부터 2024년 2 월 29 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| 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 |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지적사항없음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이상균 직인 (사인)

